

의안번호	제 391 호
의 결 연 월 일	2012년 9월 21 일 (제314회)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12년 9월 21일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91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: 2012년 9월 21일
제안자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조직신설(실·국)에 따른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「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」의 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을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직신설에 따른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개정(안 제3조제2항)
 - 청주시·청원군통합추진지원단(신설) ⇒ 행정문화위원회
 - 혁신도시관리본부(신설) ⇒ 건설소방위원회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별첨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규제관련사항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여부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

- 가.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나.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

2. 정책복지위원회

- 가. 여성정책관, 기획관리실, 보건복지국, 충북도립대학, 보건환경연구원
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나. 충북발전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
- 다.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
- 라. 충북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
- 마. 청주의료원, 충주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
- 바.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

3. 행정문화위원회

- 가. 공보관, 감사관, 행정국, 문화관광환경국, 청주시·청원군통합추진지원단,
자치연수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나.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
- 다. 충북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

4. 산업경제위원회

- 가. 경제통상국, 농정국,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나. 충북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
- 다.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- 라.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

5. 건설소방위원회

- 가. 균형건설국, 바이오밸리추진단, 혁신도시관리본부, 소방본부
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나.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
- 다.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
- 라.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

6. 교육위원회

- 가. 교육청(교육·학예)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(생략) 3. 행정문화위원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공보관, 감사관, 행정국, 문화관광 환경국, 자치연수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다. 충북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4. (생략) 5. 건설소방위원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균형건설국, 바이오밸리추진단,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다.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라.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 6. (생략) 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행정문화위원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공보관, 감사관, 행정국, 문화관광 <u>환경국, 청주시·청원군통합추진지원단</u>, 자치연수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다. 충북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4. (현행과 같음) 5. 건설소방위원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균형건설국, 바이오밸리추진단, <u>혁신도시관리본부</u>,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다.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라.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 6.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